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 800호 2010. 10. 12(화)

◀ 입법예고 ▶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0-897호) 2

◀ 공 고 ▶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제2010-903호)..... 15

○도로지정 공고(북구청 공고 제2010-215호) 21

○도로지정 공고(북구청 공고 제2010-221호) 22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0-897호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 10. 7.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2010. 2. 4 법률 제10032호)됨에 따라 환경 각 분야별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환경시책 업무 추진에 기여함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간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 역할을 부여하여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신설함.(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4조의2, 제14조의4, 제37조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0.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환경위생과장, 주소: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 270-3084, FAX 270-3090, E-mail : yhj1128@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를 “포항시” 로 하고, “시, 사업자” 를 “포항시, 사업자”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 를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6.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제목 “(언론의 역할)” 을 “(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기본계획” 을 “환경보전계획”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기본시책” 을 “환경보전시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기본계획” 을 “환경보전계획”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년” 을 “3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 다음에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5장 환경정책위원회

제25조를 제34조로 하고,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환경정책위원회)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 환경 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환경보전관련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제3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보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환경보전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 기준 및”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한다.

②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은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포항시(이하 “시”라 한다)</u>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u>시, 사업자 및 시민</u>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포항시</u>----- -----<u>포항시, 사업자</u>----- ----- ----- ----- ----- ----- -----</p>
<p>제2조(기본이념) ① <u>시</u>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기본이념) ① <u>포항시(이하 “시”라 한다)</u>-----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의) (생략)</p> <p>1. ~ 3. (생략)</p> <p>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u>기타</u>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p> <p>5. (생략)</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그 밖에</u>----- ----- ----- ----- -----</p> <p>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조(시의 책무) ① (생략) 1. ~ 6. (생략) 7.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생략)</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 (생략)</p> <p>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p> <p>제8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p>	<p>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p> <p>제4조(시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에 ----- ----- ----- ----- -----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p>

현 행	개 정
<p>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u>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포항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2. (생략)</p> <p>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u>환경기본시책</u> 및 사업계획</p> <p>4. (생략)</p> <p>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p> <p>③ 시장은 <u>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시장은 <u>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u></p> <p>⑤ 시장은 <u>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 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 하여야 한다.</u></p>	<p><u>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포항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u></p> <p>② ----- 환경보전계획-----</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환경보전시책-----</p> <p>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p> <p>③ -----환경보전계획-----</p> <p>④ ----- 환경보전계획-----</p> <p>⑤ ----- -----환경보전계획-----</p>

현 행	개 정
<p>제13조(자원의 순환적이용등의 추진)</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p>	<p>제13조(자원의 순환적이용등의 추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그 밖에</u> -----</p>
<p>제1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u>기타</u>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p>	<p>제19조(환경백서) ① ----- ----- ----- ----- <u>3년</u>-----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p>
<p>제20조(보고) ① <u>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u>주요환경시책의 추진상황</u></p> <p>2. <u>다음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u></p> <p>3. <u>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05장 환경정책위원회</u></p> <p>제25조(환경정책위원회)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포</p>

현 행	개 정
<p><u><신 설></u></p>	<p><u>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u>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u>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u> <u>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환경보전관련 사항</u> <u>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
<p><u><신 설></u></p>	<p><u>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의회 의원</u> <u>2.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u> <u>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

현 행	개 정
<u><신 설></u>	<p>제28조(임기) ① 공무원인 <u>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u></p> <p>②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u><신 설></u>	<p>제29조(위원의 해촉)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u> 2. <u>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u> 3. <u>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u> 4. <u>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u> 5. <u>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u>
<u><신 설></u>	<p>제3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u><신 설></u>	<p>제31조(회의) ① <u>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u></p>

현행	개정
<p><신설></p> <p><신설></p> <p>제25조(시행규칙) (생략)</p>	<p>때 소집한다.</p> <p>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환경보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환경보전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제3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0 -903호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공람 공고

『2020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0월 11일

- 1. 공람명칭 :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공고
-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10.10.11 ~ 2010.10.26.)
- 3. 공람장소 :
 - 포항시청 건축과(☎ 054-270-3603)
 - 포항시 남구청 건축지적과(☎ 054-270-6471)
 - 포항시 북구청 건축지적과(☎ 054-240-7471)

4. 공고내용

가.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기준년도	목표년도
연 도	2010	2020

나. 부문별 계획 등

- 1) 주거지 관리계획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설정 등
- 2) 토지이용계획 및 기준용적률 : 정비예정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 설정 등

구분	사업유형	토지이용	기준 용적률(%)
주거지 관련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경관관리구역	190
		주거관리구역	220
		주거정비구역	240
		개발유도구역	280, 400
도시환경 정비구역	도시환경정비	중생활권 중심	600
		대생활권 중심	800

※ 용적률 등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용지 부담 비율에 따라 최종 결정.

※ 개발유도구역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 준주거지역은 400%임

다. 정비예정구역 현황 : 39개소

1) 총괄

구분	개 소				면 적 (㎡)		
	기정	완료	추가	변경(안)	기정	변경 (안)	
계	29	5	10	39	1,024,776	1,300,986	
주거환경개선	10	1	-	10	236,108	236,108	
주택재개발	5	3	4	9	301,958	386,908	
주택 재건축	단독	6	-	-	6	259,480	266,300
	공동	8	1	4	12	227,230	372,990
도시환경정비	-	-	2	2	-	38,680	

2) 주거환경정비사업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고
계		10개소	236,108				
1	기정 구룡포1	구룡포읍 병포리 519	12,800	220	60	기정	주거관리
2	기정 덕산1	덕산동 127-11	10,100	220	60	기정	주거관리
3	기정 덕수1	덕수동 910-1	14,690	220	60	기정	주거관리
4	기정 상도1	상도동 268-1	30,750	240	60	기정	주거정비
5	기정 신흥1	신흥동 617-15	10,730	190	60	기정	경관관리
6	기정 오천1	오천읍 구정리 306-73	54,880	220	60	기정	주거관리
7	기정 용흥1	용흥동 65	11,000	190	60	기정	경관관리
8	기정 용흥2	용흥동 600-32	9,120	190	60	기정	경관관리
9	기정 용흥3	용흥동 306-3	13,470	190	60	기정	경관관리
10	기정 인덕1	인덕동 227	68,568	500	70	기정	사업완료

3) 주택재개발사업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고
계		9개소	386,908				
1	신설 구룡포2	구룡포읍 구룡포리 233-1	38,770	220	60	1	주거관리
2	기정 오천2	오천읍 문덕리 1188-464	91,690	220	60	기정	주거관리
3	신설 죽도2	죽도동 30-17	9,230	220	60	2	주거관리
4	신설 죽도3	죽도동 32-8	25,320	220	60	1	주거관리
5	기정 학산3	학산동 238-6	20,100	220	60	기정	주거관리
6	기정 변경	학잠1	학잠동 105-3	240	60	기정	구역지정
				250	30		
7	신설 흥해2	흥해읍 약성리 141-1	11,630	220	60	2	주거관리
8	기정 장성1	장성동 886-10	128,104	200~300	50~60	기정	구역지정
9	기정 용흥4	용흥동 57-69	35,644	300	50	기정	구역지정

4) 주택재건축사업

○ 단독주택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고
계		6개소	266,300				
1	기정	대도1 남구 대도동 135-85	43,550	240	60	기정	주거정비
2	기정	대흥1 북구 대흥동 601-29	16,690	240	60	기정	주거정비
3	기정	상도2 남구 상도동 33-29	129,900	240	60	기정	주거정비
4	기정	신흥2 북구 신흥동 674-24	23,900	240	60	기정	주거정비
5	기정 변경	학산1 북구 학산동 49-10	13,000	280	50	기정	개발유도
			19,820				
6	기정	학산2 북구 학산동 72-2	32,440	190	60	기정	경관관리

○ 공동주택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고
계		12개소	372,990				
1	신설	대도2 대도동 646-6	17,820	400	70	1	주거정비
2	기정	대신 대신동 1-1,50-20, 59-16	31,360	250	60	기정	기 신청
3	기정	두호명지파크 두호동 280-5	8,260	280	50	기정	개발유도
4	기정	두호주공2,3차 창포동 613	63,710	280	50	기정	개발유도
5	기정	영남대자연 동해면 약전리 421-7	19,530	220	60	기정	주거관리
6	신설	오천3 오천읍 구정리 45-54	22,750	220	60	2	주거관리
7	신설	죽도4 죽도동 212-30	84,980	240	60	1	주거정비
8	기정	코오롱아파트 학산동 192-1	20,900	220	60	기정	주거관리
9	기정 변경	학잠2 학잠동 198	15,240	280	50	기정	개발유도
			18,350				
10	기정	해림아파트 환호동 309-1	13,230	280	50	기정	개발유도
11	신설	홍해1 홍해읍 마산리 29-26	17,100	240	50	2	주거정비
12	기정	두호주공1 두호동 1022	55,000	300	50	기정	시행인가

5) 도시환경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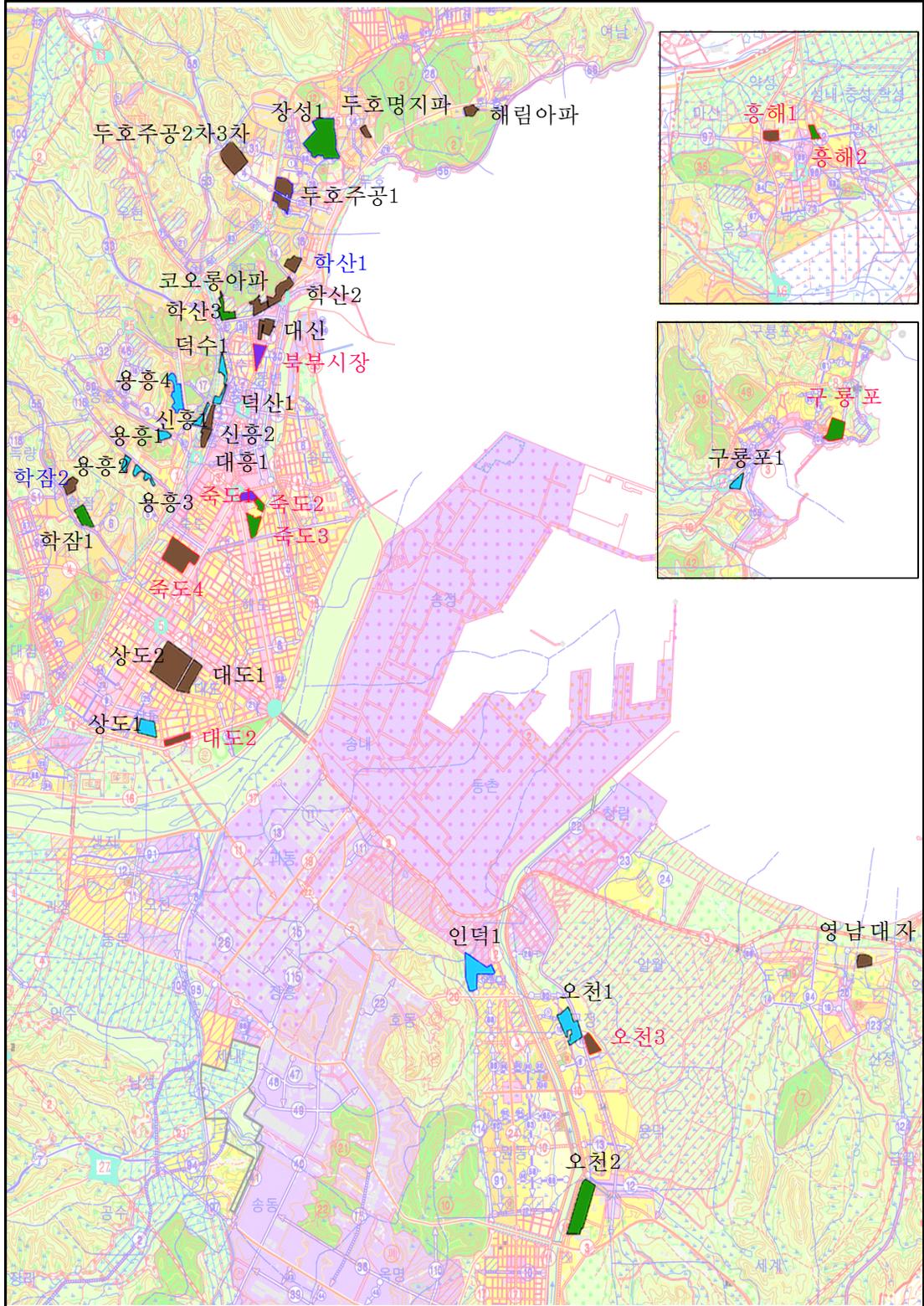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고	
계		2개소	38,680					
1	신설	북부시장	덕수동 33-12	23,000	800	80	1	대생활권중심
2	신설	죽도1	죽도동 96-28	15,680	800	80	2	대생활권중심

라.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연도	사업유형	계	비고	
계			39개소		
기정	-	소계	29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소		
		주택재개발사업	5개소		
		주택재건축사업	단독	6개소	
			공동	8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		
1단계	2013.12.31	소계	5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2개소		
		주택재건축사업	단독	-	
			공동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		
2단계	2016.12.31	소계	5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2개소		
		주택재건축사업	단독	-	
			공동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건축과(☎270-3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포항시 복구청 공고 제 2010 - 215 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 복구청장

2010. 10. 6

- 1. 건명 : 도로의 지정
-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계		1,111	120	6m이상	2010.10.6	431-3 구간 산107-1 구간에 중첩
포항시 복구	우현동 산107-1	1,003	120		“	
	우현동 431-3	108	32	1	“	

- 3. 도면 : 복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문의처 : 건축과(054-240-7474)

포항시 복구청 공고 제 2010 - 221 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 복구청장

2010. 10. 8

- 1. 건명 : 도로의 지정
-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m ²)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포항시 복구 장성동 467	포항시 복구 장성동 467	1.00	약6m	0.20m (2.0m 확보도로)	2010.10.08	

- 3. 도면 : 복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문의처 : 건축과(054-240-7483)